

- 7호선 수락산역 4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관한 청원 -

검 토 보 고

1. 경 과

- 청 원 자 : 서기팔(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두산아파트 107-1204호) 외 1,335명
- 소개의원 : 유 청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원 제6선거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접수일자 : 2015. 11. 2.
- 회부일자 : 2015. 11. 4.

2. 청원요지

-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 증대
- 교통약자와 지하철 이용시민에게 지하철 이용편의시설 제공

3. 소개의원 요지

-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 증대 및 교통약자와 지하철 이용시민에게 지하철 이용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7호선 수락산역 4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요청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장기적 검토
 - 수락산역은 외부 출입구에 E/S 4대, E/L 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4번 출입구는 편의시설 매칭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역사로 에스컬레이터 설치시 별도 예산 확보가 필요
 - 에스컬레이터 설치시 사유지 저촉으로 토지보상이 필요하나 토지보상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한 사례는 없으므로 구청과 토지주가 협의하여 보상 또는 토지사용승락이 선행 되어야 함.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가. 청원의 개요

- 동 청원은 지하철 이용시민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7호선 수락산역 4번 출입구에 2인용(1200형) 에스컬레이터 2대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임

나. 7호선 수락산역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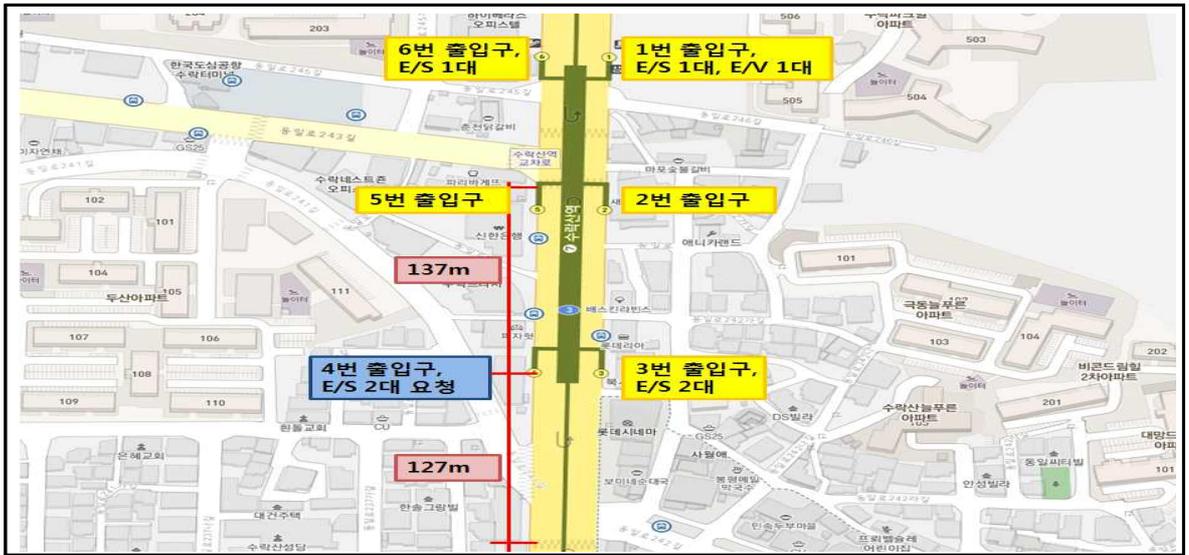
- 7호선 수락산역은 1~6번까지 총 6개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고 이중 1번, 3번, 6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1번 출입구에는 엘리베이터 1대가 설치되어 있음

〈수락산역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설치현황〉

구 분	출입구 번호					
	1	2	3	4	5	6
에스컬레이터(800형)	1대	-	2대	-	-	1대
엘리베이터	1대	-	-	-	-	-
설치연도	2004		1996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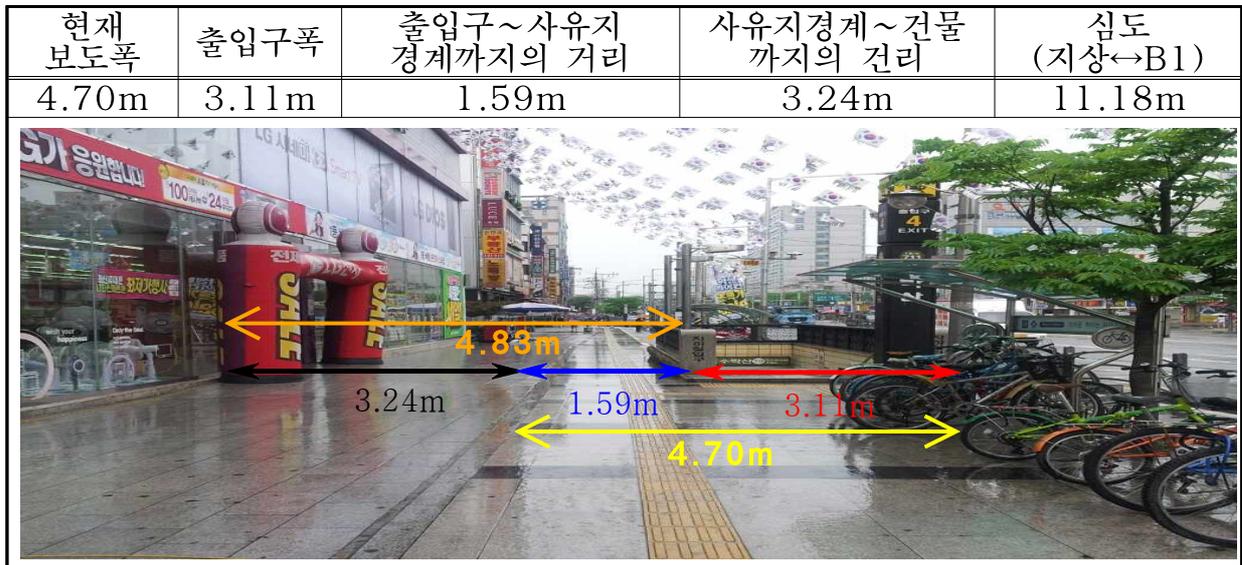
- 7호선 수락산역은 동일로를 중심으로 동측에 위치한 3개(1번, 2번, 3번) 출입구 중 2개(1번, 3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서측에 위치한 3개(4번, 5번, 6번) 출입구 중 6번 출입구 1개소에만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음

〈7호선 수락산역 위치도〉



7호선 수락산역 4번 출입구의 심도는 11.18m이고, 출입구가 위치해 있는 보도는 일반보도(폭 4.70m)와 사유지(폭 3.24m)로 구분되어 있고, 이 중 4번 출입구의 폭은 3.11m로 인접건물과 약 4.83m 거리에 떨어져 위치해 있으며, 이는 인접 건물의 사유지 (3.24m)와 잔여 보도폭(1.59m)를 포함한 것임

〈7호선 수락산역 4번출입구 위치도〉



다. 7호선 수락산역 4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검토

- 7호선 수락산역의 승강편의시설은 4개 출입구에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음에 따라 일반도로의 경우 도로 양측에 최소 1개소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도록 한 국토교통부의 관련 규정¹⁾을 충족하고 있음
- 그러나, 수락산역 4번 출입구의 지하1층부터 지상까지 심도는 11.18m로 아파트 약 4층 높이이고, 횡단보도 위치가 출입구로부터 양쪽으로 약 127m와 137m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또는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오르내려야 하는 경우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는 이용이 쉽지 않을 것임

따라서, 교통약자의 지하철 이용편의성 및 횡단보도를 대신한 도로횡단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수락산역 4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동 청원과 같이 1200형 에스컬레이터 2대를 설치하는 경우 인접건물의 사유지인 공개공지로 출입구 구조물이 위치해야 함에 따라 보상 등 협의가 필요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800형 에스컬레이터 2대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하부분에 대해 사유지에 저촉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만큼 인접 건물 소유주와의 동의 및 보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바, 에스컬레이터 설치 이전에 이에 대한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1)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 국토교통부, 2013.12월

- 한편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²⁾은 수락산역 4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편의시설 매칭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사유지 저축으로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자치구와 토지주가 협의하여 보상 또는 토지사용 승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2) 교통정책과-25975(2015.12.1.)